
한림대학교 학생회칙



한림대학교

한림대학교 학생회칙

개정 2023.06.06.

개정 2023.06.29.

개정 2023.10.06.

개정 2023.11.24.

개정 2024.09.23.

개정 2025.03.27.

목 차

- 제 1 장 총 칙
- 제 2 장 학생 총 회
- 제 3 장 전체 학생 대표 자 회 의
- 제 4 장 학 대 운영 위 원 회
- 제 5 장 중앙 운영 위 원 회
- 제 6 장 총 학 생 회
 - 제 1절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
 - 제 2절 집행 부
- 제 7 장 단 과 대 학 생 회
- 제 8 장 과 학 생 회
- 제 9 장 동 아 리 연 합 회
- 제 10 장 학 생 복 지 위 원 회
- 제 11 장 졸 업 준 비 위 원 회
- 제 12 장 재 정
- 제 13 장 징 계
- 제 14 장 선 거
- 제 15 장 회 칙 개 정
- 제 16 장 자 치 기 구 신 설

(부 칙)

전 문

한림대학교는 풍부한 인간성과 창조적 지성을 지닌 인재를 양성하고, 학술 및 문화의 진흥을 도모하는 것을 근본 이념으로 설립되었으며, 개인의 성장, 사회의 발전, 국가의 번영, 인류의 행복에 기여하는 것을 바탕으로 한 선진 인재 양성을 근본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이념의 발현은 대학인들의 자율적인 주인의식과 6월 민주항쟁 및 그 이후에 이어져 온 독재·반독재 투쟁을 계승한 대학 정신을 바탕으로, 진리와 자유의 추구 속에서 실천함에 있다고 본다.

또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역사적 학문 사상의 습득을 위한 대학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며, 이를 수호함에 적극 매진할 것을 천명한다.

이에 전 한림인의 일치된 힘과 뜻으로 학생자치기구인 학생회를 세움과 동시에 우리의 자발적인 협의에 따라 한림대학교 학생회칙을 2024년 9월 23일에 전문을 포함하여 이 회칙을 개정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한림대학교 학생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학생자치활동을 통하여 회원에의 진리탐구에의 이상을 실천하며 회원 상호 간의 자율적 발전과 민주시민의 자질함양에 힘쓰고 대학문화의 발전과 사회정의 실현에 적극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설치)

본회는 한림대학교 안에 둔다.

제4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교 학부 재학생으로 한다. 단, 휴학 및 징계 등으로 인한 정학 시는 그 기간 동안 자격이 정지된다.

제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 (1)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 (2)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운영 전반에 관한 알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 (3) 본회의 회원은 회원의 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나 정당한 자치활동이 저지당할 경우에 이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할 권리를 갖는다.
- (4)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며, 이를 위반한 사항에 한해 징계를 감수할 의무를 지닌다.
- (5) 본회의 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지닌다.
- (6)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6조 (구성)

본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1) 본회의 모든 기구는 상대적 독립성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학생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학대운영위원회, 중앙운영위원회, 총학생회, 단과대학생회, 과학생회, 동아리연합회, 학생복지위원회, 졸업준비위원회 등으로 구성한다.
- (2) 필요에 의해 구성되는 자치기구 및 특별기구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의결을 거쳐 구성한다.

제2장 전체학생총회

제7조 (구성)

전체학생총회는 본회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하고, 총학생회장을 위장으로 한다.

제8조 (권한)

전체학생총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 (1) 회원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항에 관한 의결권
- (2) 학생회 전반적 운영에 관한 중대사항에 관한 의결권

제9조 (소집)

- (1) 전체학생총회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원회 또는 회원 1/20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총학생회장이 소집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한하여 총학생회장이 직접 소집할 수 있다.
- (2) 총회는 소집 3일 전에 소집 이유를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한해서는 예외로 한다.

제10조 (의결)

전체학생총회는 회원 1/10 이상이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제11조 (지위)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는 전체학생들의 대표자로 구성된 의결 기구이며, 학생총회가 열리지 못할 경우 학생총회의 권한을 위임 받아 수행 한다.

제12조 (구성)

전학대회는 총학생회장단, 총학생회 국장단 3인, 단과대학 학생회장단, 동아리 연합회장단, 졸업준비위원회 위원장단, 각 학과 학생회장단, 각 학과 학년학생회장, 각 동아리 회장, 동아리연합회 분과장, 교지편집위원장, 방송 국장, 사생위원회위원장단, 학생복지위원장단, 예결산위원장단으로 구성한다. 단 총학생회 국장단은 의결권이 없다.

제13조 (업무 및 권한)

(1) 전학대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 ① 본회의 이념과 목적을 수호하기 위한 중대한 사항에 대한 결정
- ② 총학생회 총노선 확정
- ③ 총학생회 집행부 인준
- ④ 학생자치기구에 대한 예결산 승인 및 감사
- ⑤ 본회의 회원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사항에 대한 결정
- ⑥ 중운위에서 상정되고 학운위에서 심의한 회칙 개정안 발의
- ⑦ 학생총회 소집 요구권
- ⑧ 학생자치기구 전반에 관한 사항 결정
- 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
- ⑩ 기타 학생총회가 열리지 못할 시 그 권한 대행

(2) 전학대회는 각 자치기구에 대하여 필요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각 자치기구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전학대회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로 학생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4) 전학대회는 본회 회칙의 해석 적용에 있어서 다툼이 있을 시 그 부분에 대하여 유권 해석을 내릴 수 있다.

(5) 1항과 4항의 권한 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따로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14조 (징계)

회칙위반 혹은 본회의 업무수행 상 하자를 야기 시킨 회원에 대하여 전학대회는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징계의 대상, 종류 등 징계 전반에 대하여 따로 시행세칙을 둔다.

제15조 (탄핵발의권 해임건의권 및 징계건의)

(1) 전학대회는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이 회칙을 위반하였거나 본회의 업무수행 상 중대한 하자를 야기한 경우 전학대회 구성원 1/3이상의 연서에 의한 탄핵 발의안 상정과 출석대표자 2/3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결의안을 학생총회에 상정한다.

- (2) 총학생회 집행부가 본회의 업무수행 상 중대한 하자를 야기한 경우 출석 대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 의결한다.
- (3) 전학대회는 본회의 활동에 있어서 특히 재정적인 부분에서 중대한 하자를 야기한 회 원에 대하여 학교의 학칙에 근거하여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제16조 (의장)

전학대회의 의장은 총학생회 회장이 부의장은 부총학생회장이 겸임한다.

제17조 (총회)

- (1) 전학대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어 소집한다.
- (2) 정기총회는 매 학기초와 매 학기말에 의장이 소집한다.
- (3) 임시총회는 전학대회 구성원의 1/4, 학운위 구성원 1/3, 중운위원 1/2 이상의 요구 가 있을 시 혹은 의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될 시 전학대회 의장인 총학생회장이 소집한다.
- (4) 전학대회의 소집은 소집 3일 전에 공고한다.

제18조 (의결 정족수)

- (1) 전학대회의 의결 정족수는 재적 대표자 과반수 출석에 출석 대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 학생총회 소집 요구 시 재적 대표자 과반수이상 출석에 출석대표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 의결권이 없는 총학생회 국장단은 의견 정족수에서 제외한다.

제19조 (임기)

전학대회 의장과 의원의 임기는 12월 둘째 주 목요일부터 다음 연도 12월 수요일까지로 한다. 단, 다음과 같은 사항은 예외로 한다.

- (1) 전학대회 의원이 임기는 매년 1학기 개강이후 전학대회 의원직으로 선출된 이후부터 이다.
- (2) 학년학생회장(과대표)인 전학대회 의원의 임기는 한 학기로 한다.
- (3) 동아리 연합회 소속 전학대회 의원의 임기는 동아리 연합회 관례에 따른다.

제3장 확대운영위원회

제20조 (지위)

확대운영위원회(이하, 확운위)는 본회의 최고 운영기구이다.

제21조 (구성)

확운위는 총학생회장단, 총학생회 국장단 3인, 단대학생회장단, 동아리연합회장단, 각과 학생회장으로 구성한다. 단, 총학생회 국장단은 의결권이 없다.

제22조 (의장)

확운위의 의장은 총학생회장, 부의장은 부총학생회장이 겸임한다.

제23조 (업무 및 권한)

- (1) 학생총회 소집 요구권
- (2) 전학대회 소집 요구권
- (3) 총학생회에서 임명된 간부를 보고 받고, 총학생회 사업계획안을 보고 받고 심의한다.
- (4) 본회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고 심의한다.
- (5) 학생자치기구의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전학대회가 열리지 못했을 경우 그 권한을 대행한다.
- (6) 기타 중운위에서 제출한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제24조 (회의)

- (1) 확운위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눈다.
- (2) 정기회의는 한달에 한번 의장이 개최한다.
- (3) 임시회의는 확운위 위원 1/3 이상, 중운위 위원 1/2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또는 총학생회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될 시에 확운위 의장인 총학생회장이 소집한다.

제25조 (일반의견 정족수)

- (1) 확운위의 의결정족수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 의결권한이 없는 총학생회 국장단은 정족수에서 제외한다.

제26조 (특별의견 정족수)

- (1) 학생총회, 전학대회 소집요구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1/3이상으로 의결 한다.
- (2) 의결권한이 없는 총학생회 국장단은 정족수에서 제외한다.

제5장 중앙운영위원회

제27조 (지위)

중앙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상설적인 운영기구이다.

제28조 (구성)

중앙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단과대학 학생회장, 동아리연합회장으로 구성한다.

제29조 (의장)

중앙운영위원회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겸임한다.

제30조 (업무 및 권한)

- (1) 전체 자치기구의 제반사업을 검토 이에 대한 심의 조정권
- (2) 본회의 예산안 및 결산안을 작성하여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제출한다.
- (3) 회칙 개정안에 대한 발의권
- (4) 임시기구 설치권
- (5) 학생총회 소집 요구권
- (6) 학칙위반에 대한 징계 요구권

제31조 (소집)

- (1) 정기회의는 매월 1회로 하고, 그 시기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2) 임시회의는 총학생회장이 요구와 운영위원 1/3이상의 요구에 의한다.
- (3) 사생위원단은 기숙사비 협상 시 구성원으로 포함시킨다.

제32조 (의결)

중앙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총학생회

제33조 (지위)

총학생회는 본 회의 회원을 대표하는 기구이다.

제34조 (구성)

총학생회는 본 회의 모든 외원으로 구성된다.

제35조 (지위)

- (1) 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를 대표하여 학생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확대운영위원회, 중앙운영위원회, 총학생회 집행부의 의장이 된다.
- (2) 총학생회장은 대외활동에 있어 본회의 대표권을 갖는다.
- (3) 부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장을 보좌하며 총학생회장이 유고시 그 권한을 대행한다.
- (4)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탄핵이나 학생총회의 불신임 결의에 의하지 않고서는 그 직을 상실할 수 없다.

제36조 (임기)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의 임기는 해당 당선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7조 (업무 및 권한)

- (1) 집행부 모든 간부에 대한 임명 요구권
- (2) 학생총회, 중앙운영위원회, 집행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업무를 주관한다.
- (3)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승인된 예결산안을 본회의 모든 회원에게 공개한다.
- (4)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심의 확정된 사항 중 총학생회장 직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집행한다.
- (5) 본회의 학생활동 및 회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학교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6) 본회의 회칙개정에 대하여 중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의할 수 있으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개정된 회칙을 3일 이내에 공고한다.
- (7) 중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8) 총학생회의 전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및 결산을 편성하여 중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제출한다.
- (9) 집행부 각 국장 및 부장을 해임하고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동의를 얻어 이를 새로이 임명할 수 있다.
- (10)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제출되어 승인된 사업 이외의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된 사업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사후승인을 받는다.
- (11) 임시기구 설치권
- (12) 매 학기 개강 30일 이내에 학생총회를 소집한다.
- (13) 기타 총학생회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집행한다.

제38조 (권한대행)

총학생회 회장단 궐위시에는 중앙운영위원 중 1인을 선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전학대회에서 인준한다.

제39조 (권한대행의 임기)

총학생회장단 임기와 동일하다.

제40조 (권한대행의 업무 및 권한)

총학생회장단 업무 및 권한과 동일하다.

제2절 집행부

제41조 (지위)

집행부는 본회의 최고 집행기구이다.

제42조 (구성)

집행부는 구성은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 및 각 국장과 부장으로 구성한다.

제43조 (업무 및 권한)

- (1)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및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업무를 집행한다.
- (2) 업무 및 권한은 당해연도 총학생회에서 결정한다.

제44조 (임기)

집행부의 각 국장 및 부장의 임기는 총학생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다.

제7장 단과대 학생회

제45조 (지위)

단과대학학생회는 각 단과대학 재학생을 대표하는 기구이다.

제46조 (구성)

단과대학학생회는 당해 각 단과대학 재학생 전체를 회원으로 한다.

제47조 (회장과 부회장)

- (1) 단과대학 학생회장과 부회장은 각 단과대학 회원 전체의 직접선거로 선출된다.
- (2) 단과대학 학생회장은 각 단과대학학생회를 대표하며 부회장은 회장이 유고시 그 권한을 대행한다.
- (3) 단과대학 학생회장이 사퇴 및 기타 사정에 의한 탄핵 시에는 보궐선거를 원칙으로 하고, 잔임기간이 150일 이내일 경우는 각 단과대학학생회 집행순위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48조 (업무 및 권한)

- (1) 단과대학학생회는 각 단과대학의 자치활동을 수행한다.
- (2) 각 단과대학학생회의 사업계획, 예산편성 및 결산내역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제49조 (회칙)

각 단과대학의 세부사항은 각 단과대학 학생회칙의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50조 (권한대행)

단과대학 회장단 궐위시에는 단과대운영위원 중 1인을 선출, 그 직무를 대행하며 단과대학 회원 전체의 직접선거로 인준한다.

제51조 (권한대행의 임기)

단과대학 회장단 임기와 동일하다.

제52조 (권한대행의 업무 및 권한)

단과대학 회장단 업무 및 권한과 동일하다.

제8장 과학생회

제53조 (지위)

과학생회는 각 과의 재학생을 대표하는 기구이다.

제54조 (구성)

과학생회는 당해 각 과 재학생 전체를 회원으로 한다.

제55조 (회장과 부회장)

- (1) 과 학생회장과 부회장은 각 단과대학 회원전체의 직접선거로 선출된다.
- (2) 과 학생회장은 각 과학생회를 대표하며 부회장은 회장이 유고 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56조 (업무 및 권한)

과학생회는 각 과의 자치활동을 수행한다.

제57조 (회칙)

각 과 학생회 운영의 세부사항은 각 과 학생회칙의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9장 동아리연합회

제58조 (지위)

동아리연합회는 중앙동아리와 동아리인의 대표기구이다.

제59조 (구성)

동아리연합회는 등록된 중앙동아리와 중앙동아리인으로 구성한다.

제60조 (회장과 부회장)

- (1) 동아리연합회 회장은 각 동아리대표자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 (2) 동아리연합회 회장은 동아리연합회를 대표하며 회장이 유고시 부회장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제61조 (회칙)

기타 세부사항은 동아리연합회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62조 (권한대행)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결위 시에는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 중 1인을 선출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며 동아리대표자회의에서 인준한다.

제63조 (권한대행의 임기)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임기와 동일하다.

제64조 (권한대행의 업무 및 권한)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업무 및 권한과 동일하다.

제10장 학생복지위원회

제65조 (지위)

본위원회는 학원민주를 통해 대내외적으로 본회 회원들의 권익과 복지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자치기구이다.

제66조 (구성)

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집행부로 구성한다.

제67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 (1)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투표를 통하여 선출한다.
- (2) 위원장은 학생복지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유고시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68조 (업무 및 권한)

- (1) 본위원회는 회원들의 복지향상에 힘쓴다.
- (2) 본위원회는 사업계획서 및 예결산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제69조 (회칙)

기타 세부사항은 학생복지위원회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11장 졸업준비위원회

제70조 (지위)

본위원회는 본회 회원의 졸업예정자에 관계한 졸업준비에 관한 제반업무를 관장하는 자치기구이다.

제71조 (구성)

본위원회는 졸업준비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과 졸업준비위원들로 구성한다.

- (1)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관할 하에 각 과 졸업준비위원들의 직접선거로 선출된다.
- (2) 위원장은 본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유고시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 (3)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참석 및 발의 할 수 있다.

제73조 (업무 및 권한)

- (1) 본위원회는 졸업앨범 및 졸업준비에 관한 학교행정에 참여할 수 있다.
- (2) 본위원회는 사업계획 및 예결산에 관하여 자체 감사기구를 꾸리고 자체 감사를 받는다.

제12장 재정

제74조 (수입)

- (1) 본회의 재정은 학생회비와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여기서 기타 수익금은 주점 수익금을 제외한 바자회, 기부금 등이 포함된다.
- (2) 본회의 활동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본회의 활동이라 함은 본회가 속해있는 과, 학부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활동을 뜻한다.
- (3) 회비의 징수 및 관리는 학교 당국에 위임한다.

제75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당해 각 기구 집행부의 집행일로부터 차기년도 집행부의 집행 전까지로 하고, 예산편성 및 결산기준은 1학기과 2학기과 구분한다.

제76조 (예산편성)

- (1) 본회의 각 기구는 매 학기 개강 후 10일 이내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본회의 운영위원회는 85조의 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심의하여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제출 및 공고하여야 한다.
- (3) 제 81조에 의하여 심의된 안은 10일 이내에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승인한다.

제77조 (경정예산)

예산 확정 후 사업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 및 심의하고,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승인한다.

제78조 (가예산)

예산안이 소정 기한 내에 확정되지 못하여 본회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 운영위원회에서 1개월간의 가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제79조 (집행)

- (1) 예산의 집행 시에는 영수증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각 기구에는 회계장부를 비치하여 일체의 지출을 기록하여야 한다.
- (2) 본회의 각 기구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감사결과에 의하여 예산 인출중지 등의 예산 집행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제80조 (결산)

- (1) 본회의 각 기구는 매 학기 개강 후 10일 이내에 사업계획서와 함께 결산 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운영위원회는 87조의 결산안을 5일 이내에 심의하여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보고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81조 (감사)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본회 재정의 안정적 집행을 위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 (1)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결산 심의 전에 본회의 업무 및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 (2)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본회의 업무 및 회계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 할 수 있다.
- (3) 특별감사는 사전에 해당 기구의 대표자에게 감사의 이유를 통고하면 언제라도 실시할 수 있다.
- (4)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감사결과를 3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2조 (예결산위원회)

본회의 예·결산에 대한 제반 업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예·결산위원회를 둔다.

- (1) 예·결산위원회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 (2) 예·결산위원회는 당해 결산 완료 후 다음 예·결산위원회가 구성되면 인계 후 해체된다.
- (3) 기타 회칙 상에 기재되지 아니한 결산사례는 예·결산위원회와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83조 (예·결산시행세칙)

기타 예·결산에 관한 세부사항은 예·결산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84조 (총학생회비)

- (1) 총학생회비는 학기별 재학생에 한하여 납부를 받는다.
- (2) 총학생회비는 학기별 100% 기준으로 총학생회 35%, 단과대학 60%, 동아리연합회 5%를 최소 분배금액으로 규정한다.

제13장 징계

제85조 (징계사항)

본회의 회원이나 각 기구는 다음과 같은 경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의해 징계를 받는다.

- (1) 회칙을 위반한 경우
- (2) 중요한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3)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4) 본회의 회원이나 기구가 회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 (5) 기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징계사항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86조 (징계방법)

- (1) 본회의 회비를 납부하지 않았을 시에는 학내의 각종 장학금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 (2) 제92조에 해당하는 행위자나 기구의 대표자에 한해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학교 당국에 징계조치를 의뢰한다.

제14장 선거

제87조 (선거방법)

본회의 선거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로 한다.

제88조 (선거권)

본회의 선거권은 해당 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회원으로 한다.

제89조 (피선거권)

- (1) 총학생회장과 부회장, 단과대학 학생회장과 부회장 : 본회의 회원으로 4학기 이상 등록을 필하고, 회원 1/15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 (2) 기타 자치기구의 피선거권은 각 기구의 시행세칙에 따른다.
- (3) 당해 중앙운영위원은 차기년도 동직책의 운영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제90조 (선거시기)

- (1)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 단과대학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의 선거시기는 임기년도 전년의 11월 중에 실시한다.
- (2)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시에는 변경할 수 있다.

제91조 (선거관리위원회)

본회의 선거에 대한 제반업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 (1)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단과대학 선거관리위원회로 구성한다.
-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구성한다.
- (3)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부총학생회장, 부위원장은 총학생회 국장 1인으로 구성한다.
- (4) 그 외 각 기구는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 (5) 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연도 피선거권이 없다.
- (6) 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선거 완료 후 다음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면 인계 후 해체 된다.
- (7) 기타 회칙 상에 기재되지 아니한 선거사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단위 선거운동부와 협의 하에 결정한다.

제92조 (보궐선거)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각 기구의 장이 궐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단, 잔임기간이 150일 미만일 경우 각 기구의 직 순위에 따라 그 업무를 대행한다.

제93조 (선거시행세칙)

기타 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학생회 및 각 기구의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제94조 (임시위원회)

임시위원회는 총학생회 미선출로 인한 비상대책위원회로 구성될 시 유효하다.

임시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당해 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단 후보자 궐위 시, 각호의 해당하는 자로 임시 구성하여 당해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운영한다.

- (1) 위원장은 중앙운영위원회 중 2인을 선출하여 의장단으로 임시 구성한다.
- (2) 전체학생대표자회 소속 중 단과대학 학생 대표에게 추천을 받은 자로 각 1인씩 총 13인으로 구성한다.

(3) 중앙선거관리 임시위원회는 당해연도 선거 종료 시점에 맞춰 해체된다.

제15장 회칙 개정

제95조 (개정 발의)

- (1)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적 대의원 1/3 이상 발의
- (2) 중앙운영위원회 재적 위원 1/2 이상이 발의
- (3) 본회 회원 1/20 이상이 발의

제96조 (공고)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7조 (공포)

의결된 개정안은 3일 이내에 총학생회장이 이를 공포한다.

제16장 자치기구 신설

제98조 (목적)

본 회칙은 자치기구의 대중성과 조직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본회의 위상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99조 (등록절차)

발의자는 등록서류를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중앙운영위원회는 등록서류를 확인한다.

제100조 (심의)

확대운영위원회는 자치기구 신설안을 심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인준자격을 부여한다.

제101조 (최종인준)

인준자격이 된 자치기구 신설안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적위원 과반 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최종 인준한다.

제102조 (등록서류)

- (1) 본회 회원 1/7 이상의 추천인 명부

(2) 신설 기구 설립목적이 서술된 신청서 1부

(3) 신설 기구명칭, 지위, 구성, 대표선출 등이 명시된 시행세칙 1부

(부 칙)

제1조

본 회칙은 공포한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본 회칙은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 관례에 따른다.